보상위원회 규정

HD현대건설기계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제47조와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 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의 자격도 당연 상실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의 유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
2. 등기이사의 보수 또는 지급 기준 승인
3. 미등기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법령 변경에 따른 단순한 조문 수정, 회사 내 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이 규정의 체계와 효력에 직접적인 효력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개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